

(第73回－文化教育第2次)

<p>(參 照)</p> <p>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 및 제7조중 “소년소녀교향악단”을 각각 “청소년교향악단”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위한 것으로 施行時期는 94年 7月 21日부터 입니다.</p> <p>다음 根據를 말씀드리면 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律施行令 第14條 準用規定에 따라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5條가 準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代理 蘇中天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p> <p>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教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2.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教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提出)</p> <p>(10時 18分)</p> <p>○委員長代理 蘇中天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教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議事局長 金東臣 議事局長 金東臣입니다.</p> <p>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教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p> <p>먼저 提案經緯를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教育委員 張光石 委員 外 7人이 發議 한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教育委員日費및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이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第41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審議 議決 되었기에 이를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거 서울特別市議會 본 회의에 提案하는 것입니다.</p> <p>다음은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 教育委員會 日費支給基準이 現行 5萬원에서 6萬원으로 引上調整되어 이를 整備 施行하기</p>	<p>(報 告)</p> <p>1. 제안경위</p> <p>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2. 제안사유</p> <p>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이 인상 조정되어 이를 정비·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p> <p>3. 주요골자</p> <p>○ 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p> <p>○ 시행시기 — '94. 7. 21부터 적용한다</p> <p>4. 근거</p> <p>○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p> <p>○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p> <p>5. 검토의견</p> <p>가. 현황</p> <p>•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일비·여비지급과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p>

<p>• 19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일비지급 범위가 인상 개정되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바,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일비가 5만원이내에서 6만원이내로 인상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p> <p>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조례(안)의 부칙규정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 7. 2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시행일자와 법률의 효력발생일자를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요청에 배치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음. <p>다. 결어</p> <p>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나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일비가 5만원 이내에서 6만원 이내로 인상조정되었으므로 조례입법체계상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됨.</p> <p>.....</p> <p>이상 報告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代理 蘇中天 다음은 本 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네, 李永輔委員님 質疑하십시오.</p> <p>○李永輔委員 教育委員會 日費를 引上調整하려</p>	<p>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서울特別市가 運營하는 다른 非常設機構의 委員들하고 日費의 형평을 고려했는지 궁금합니다.</p> <p>그리고 調整時期를 94年 7月 21日부터 適用한다고 되어 있는데 95年 1月 1일부터施行하면 곤란한 特別한 事由가 있는지 答辯해 주세요.</p> <p>○議事局長 金東臣 教育委員 日費에 대해서는 市議會 議員님과 같은 水準으로 日費를 策定한 것입니다. 또 法에 의해서 準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引上한 것입니다. 法에 遷及適用은 原則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本 件과 같이 委員들의 日費나 또 旅費 等 報酬의인 성격을 띤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市議會 議員님들도 遷及해서 日費를 引上適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孫馥委員 이것 봐요, 서울市議員들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大統領令으로 바뀐 上位法에 의해서 條例를 改正한다고 그러면 되지, 왜 자꾸 서울市議員하고 똑같다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세요. 大統領令으로 地方自治法施行令이 바뀜으로 인해서 日費가 引上된 것 아닙니까?</p> <p>○議事局長 金東臣 아니, 遷及適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p> <p>○李永輔委員 왜 서울市議員하고 같이 適用하려고 그러는 그 의도가 뭐예요?</p> <p>○崔沆洛委員 質問에 대한 答辯만 하시라고요.</p> <p>○李永輔委員 아니, 여기에 국한된 答辯만 하세요. 왜 서울市議員하고 같이 適用해서 하느니 어찌느니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야 할 理由가 어디 있습니까? 왜 또 서울市議會가 遷及했다고 教育委員도 遷及해야 되는 무슨 理由가 있어요?</p> <p>○議事局長 金東臣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p>
---	---